

별첨 #2

각 서

계 약 번 호 : 2018-융합-위05

계 약 건 명 : 2018년도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지하역사 공조시스템 지능화)

위 계약에 대한 선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계약조건외 이행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보증서 또는 증권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01호]에 따르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우리공사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귀 공사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귀 공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 사용 내역서를 귀 공사에 제출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계약의 노임(공사 계약은 제외)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타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5.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 서면통지 하겠음.
6.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공사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귀 공사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공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18년 11월 2일

계약상대자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피아이2 101동 1301호

상 호 : (주)애니텍

대 표 자 성 명 : 이 주 열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